

국제하계대학 규정

2009. 4. 21. 제정

2015. 2. 6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하계대학(이하 “국제하계대학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국제하계대학은 본교와 외국대학간의 교류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학문의 국제화 추구 및 교내 계절학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환교육에 관한 사항
2. 교내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
3. 기타 국제하계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3조(원장) ① 국제하계대학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. (개정 2015.2.6.)

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하계대학의 업무를 관장한다.

제4조(조직) ① 국제하계대학에 행정실을 둔다. (개정 2014.10.27)

② 행정실은 국제하계대학의 행정 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, 부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차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. (개정 2015.2.6.)

③ 국제하계대학에 직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0.7.7)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국제하계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하계대학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교무처장, 기획처장, 국제교류처장, 원장, 부원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 (개정 2014.10.27)

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국제하계대학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국제하계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국제하계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
4. 국제하계대학 제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국제하계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
국제하계대학 규정

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사업계획 및 보고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제 7 조 (경비 및 현금 출납) ①국제하계대학의 경비는 교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국제하계대학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.

제 8 조 (학사운영세칙) 국제하계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09. 4. 21. 제정)

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7. 7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10. 27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 및 제2항, 제5조제2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2. 6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